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0.

발 의 자 : 김기현 · 김기웅 · 김 건
박성민 · 윤한홍 · 한지아
조정훈 · 김은혜 · 박성훈
김선교 · 송언석 · 이만희
김승수 · 강명구 · 김소희
이소희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·촬영·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재판 진행 중 촬영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, 법원이 제공한 영상 등의 사후적 이용 방식, 영상의 편집·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따라 공개된 재판 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가공·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, 재판의 공정한 심리 및 사법절차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나 제재수단이 미비함에 따라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배포로 인하여 판결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공개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사용, 편집·가공 및 배포

하는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9조 및 제61조).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녹화, 촬영, 중계방송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을 재판의 공정한 심리를 저해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는 등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편집·가공하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영상 또는 음성의 사용, 편집·가공 및 배포의 허용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법원은 제59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제59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녹화, 촬영 또는 중계방송된 재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녹화 등의 금지) (생 략)	제59조(녹화 등의 금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녹 화, 촬영, 중계방송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을 재판의 공정 한 심리를 저해하거나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는 등 사법 신뢰 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방식으 로 편집·가공하여 배포하여서 는 아니 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 제2항에 따른 영상 또는 음 성의 사용, 편집·가공 및 배포 의 허용 기준과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</u>
제61조(감치 등) ① (생 략)	제61조(감치 등) ①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<u>② 법원은 제59조제2항을 위반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제59조제2항 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</u>

② ~ ④ (생략)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.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.	<u>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다.</u> 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) ⑥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. ⑦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.
---	--